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민권원칙 교육 Multilingual Learner Education (한국어 버전)

2024년 1월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민권원칙 The Civil Rights Principles for Multilingual Learner Education 은

민권과 인권에 관한 지도자 회의 The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와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 기금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다국어 학습자 교육의 기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의 가정과 학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운입니다!¹ 이 강력한 자산은 아이들의 삶과 교육을 풍요롭게 하고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민주주의의 건설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² 안타깝게도, 어떤 어린이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는 사실은 종종 장애 요소나 결함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근거로 그 어린이를 또래로부터 분리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심지어 차별과 강압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모국어를 앗아가는 정책과 관행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³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 환경에 접근하고 소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에 시민권 커뮤니티는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모든 관련 정책에 통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평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⁴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민권원칙 교육



원칙 #1: 포용성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을 교육의 어느 측면에서도 배제하지 말 것이며 학생과 그 가족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 아동은 이민자 신분, 선호하는 언어 또는 영어 학습자 (EL)로 식별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⁵ 모든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⁶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 아동은 전 교과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또래 아동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⁷ 교육 중에 아동의 모국어를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⁸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아동은 1964년 미국 민권법의 타이틀 식스에 의거하여 출신 국가(언어 상태 포함)에 따른 학교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1974년 동등교육 기회법에 따라 모국어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⁹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는 영어 습득과 모국어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는 장애관련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식별 및 평가되어야 합니다.¹⁰ 또한 어떤 아동도 출신 국가나 영어 학습자 신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언어 발달과 콘텐츠 영역 지식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 #2: 부모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부모와 가족(선택된 가족 포함)은 학교 기반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¹¹ 제공되는 번역은 학부모와 가족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고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가족에게 학교 또는 학군에 관한 문서, 회의, 기타 의사소통을 제공할 때는, 그들의 자녀, 다른 자녀,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미숙련 교직원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학부모와 가족은, 반이민 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민세관집행국과 같은 기관의 단속 협박 및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포용적인 학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¹² 법 집행 기관과의 관계는 부모와 가족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가족은 자녀와 이중 언어 교육 서비스 기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정보를 얻고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학습과 언어 발달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다국어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¹³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 학습자 서비스 과정의 평가 결과 및 분류의 의미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언어로 된) 접근을 포함하여, 입학 및 퇴학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¹⁴ 활발한 상담과 참여가 없으면 아동이 영어 학습자 지원에 부적절하게 배치되거나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조기 교육

한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유아에게 문화적으로 부합하고 발달에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것. 조기 보육 및 교육 (ECE) 프로그램은 이중 언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문화적, 언어적으로 부합하고 발달에 적합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동을 위해, 프로그램은 영어 습득을 촉진하는 동시에 아동의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발달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의 모국어는 문화적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사회 정서 발달 포함) 및 취학 준비 (조기 문해력, 조기 수리력, 인지 능력)를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와 가족은 (선택된 가족 포함) 서비스 계획 및 실행의 모든 측면에서 전문가이자 파트너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주, 학군, 기관 및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에 대해 시스템 전체에 걸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모드와 언어로 제공되는 고품질의 전문성 개발 및 코칭을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무료로 제공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는 과목 및 콘텐츠 영역과 학년 수준에 걸쳐 다국어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재원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유아의 모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포함한 조기 교육자는 언어 발달에 초점을 맞춘 문화적, 언어적 대응 교육법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원칙 #4: 교사 준비

모든 교사가 영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준비와 지원을 제공할 것.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해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 개발 기회와 준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¹⁵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과 주 기관은 자체 육성 프로그램 및 증거 기반 기억 프로그램과 같은 강력한 다국어 교육자 파이프라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 장애인 교육, 그리고 이중 인증을 (일반 교육과 장애인 교육) 받은 교사들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과 수업에 영어 학습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투입되기에 앞서 영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원칙 #5: 기금 조달

영어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충분한 기금을 지원할 것.

자격 있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의 타이틀 쓰리 (ESSA)를 포함하여, 영어 학습자에 대한 기금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¹⁶ 수백만 명의 영어 학습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쓰리가 연방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각 주에서는 자금 조달 방식에 영어 학습자에 대한 가중치를 포함하여 이 학생 집단을 겨냥한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차성과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모집하고 고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가 주로 유색인종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이 집중된 학교 및 학군에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 학습자는 인종과 가족 소득에 따른 자금 불평등으로 인한 불균형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타이틀 쓰리 및 기타 전용 기금의 출처는 기금 기반이 공평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의미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군에 추가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학군이 영어 학습자를 위해 받는 자금이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됨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칙 #6: 영어 사용 능력

학생들의 영어 능력 습득을 지원

학교와 학군은 늦게 입학한 영어 학습자 장기 영어 학습자 (LTELs), 최근 합류한 영어 학습자 (RAELs), 그리고 정규 교육이 제한적이거나 중단된 학생들을 (SIFE/SLIFE) 포함한 영어 학습자들이 종합적인 영어 습득을 위한 경로를 밟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격 아동을 적절하게 식별하는 자격요건과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학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는 영어 능력 성취로 이어지는 언어 발달에 초점을 맞춘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영어 원어민들과의 격리를 방지하는 증거 기반 교육 모델이 포함됩니다.

원칙 #7: 데이터

기회 균등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것 .

학교와 학군은 데이터 수집 과정의 모든 단계(수집, 입력, 분석 등)에서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세분화되어 교차 집계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종합적인 영어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수집된 영어 학습자 데이터는 인종, 민족, 모국어, 사회경제적 지위, 영어 학습자 상태, 장애 상태, 장애 유형, 성별, 출신 국가, 임신 또는 부모 상태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교차 집계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학군 내에서 영어 학습자의 진도 (영어 및 콘텐츠 영역 능력의 진도 둘 다) 를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민원데이터 컬렉션 및 ESSA 학교 성적표에도 영어 학습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는 (신규 이민자 데이터,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 이전 영어 학습자, Ever ELs,¹⁷ LTELs, RAELs, SIFE 를 포함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며, 보고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영어 학습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교육자, 변호사, 연구원, 정책 입안자가 공개적으로 보고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 #8: 콘텐츠 지식

영어 학습자가 풍부한 고급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영어 능력을 습득하는 동안 콘텐츠 영역 지식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배우는 동안 핵심 커리큘럼에 동등하고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가 영어만 사용하는 또래 학생들과 더불어 학업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지원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에게 고급 과정, 이중 등록, 대학과목선 이수제(AP)/대학 입학의 국제자격제도(IB) 과정,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프로그램,¹⁸ 고등학교 졸업에 인정되는 학년별 학점 인정 과정 등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를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게 하는 보충 과정에 불균형적으로 등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¹⁹

원칙 #9: 다국어 교육

영어만을 강요하지 말고, 교육 기회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 접근 방식을 피할 것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 기반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여러 교과목에서 영어가 능숙해지는 만큼 그들의 모국어 역시 잘 발달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어사용만 강요하는 교육은 교육의 관행을 훼손하므로 특히나 치명적이며 또, 아이, 가족, 교육자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가 무가지차하다는해롭고 부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이 일반 커리큘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언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어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도 맞지 않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이중 언어 사용 능력과 이중 문해력을 키우고 학생들의 문화적 지식을 활용하여 학업적 성공을 지원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모국어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마이너스” 모델입니다.²⁰ 프로그램 구조, 교사 지원,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더하기” 언어 프로그램 모델들은 학생들의 이중 언어 사용, 이중 문해력, 다문화 지식을 개발하기에 학생 개개인과 학교 공동체 전체에 혜택을 줍니다. 연방, 주, 학교, 학군 및 캠퍼스 정책과 관례는 개별 학생의 성과와 캠퍼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된 이러한 모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원칙 #10: 고등교육과정 이후의 교육

영어 학습자에게 2 단계 시스템이 없는 학위 프로그램 및 인력 교육을 포함한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에게 학위 프로그램, 인력 훈련, 직업 및 기술 교육과 같은 고등 교육 과정의 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은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생의 고유한 문화적, 언어적,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어 학습자가 고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표에 맞는 지원과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를 또래 학생들과 분리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2 단계로 된 시스템을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The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AACT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Autistic Self Advocacy Network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Center for Learner Equity

Committee for Children

Council of Parent Attorneys and Advocates

Disability Rights Education & Defense Fund

Education Law Center

Education Law Center-PA

IDRA

Impact Fund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JACL)

LatinoJustice PRLDEF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Inc.

National Alliance for Partnerships in Equity

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tional Black Justice Coalition

National Center for Parent Leadership, Advocacy, and Community Empowerment (National PLACE)

National Council of Asian Pacific Americans (NCAPA)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NDR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ILC)

National Indian Education Association

National Urban League

National Women's Law Center

Parents as Teachers National Center

PFLAG National

Public Advocates

Southeast Asia Resource Action Center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The Education Trust

UnidosUS



¹ 2020년 현재 미국 초중고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영어 학습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10%에 달한다. 다국어 학습자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2013년 영어 학습자 230만 명 중 23%는 외국 태생이었다. 나머지 77%(180만 명)는 미국 태생이었다. 참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3). English Learners in Public Schools. Condition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23년 9월 21일에 <https://nces.ed.gov/programs/coe/indicator/cgf>에서 발췌; Park, Maki, Zong, Jie, and Batalova, Jeanne. “Growing Superdiversity among Young U.S. Dual Language Learners and Its Implications.”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8년 2월 자료. <https://www.migrationpolicy.org/research/growing-superdiversity-among-young-us-dual-language-learners-and-its-implications>; Zong, Jie and Jeanne Batalova. “The Limited English Proficient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2013”.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5년 7월 8일 자료.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limited-english-proficient-population-united-states-2013#Age,%20Race,%20and%20Ethnicity>.

² Kroll, Judith F, and Paola E Dussias. “The Benefits of Multilingualism to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Residents of The US.” Foreign language annals vol. 50,2 (2017): 248-259. doi:10.1111/flan.12271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662126/>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 원어민이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다인종, 다문화, 다국어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다국어 사용의 많은 혜택을 누리며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³ 다국어 학습 학생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바람: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Ensuring English Learner Students Can Participate Meaningfully and Equally in Educational Programs (2015):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Title VI’) 및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 of 1974(‘EEOA’)에 따라, 공립학교는 EL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미 교육부(ED)와 미 국무부(DOJ)는 EL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 교육기관(SEAs), 공립 학군 및 공립 학교가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상기시킬 목적의 공동 지침을 발표한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el-students-201501.pdf>

⁴ 이 문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영어를 같이 배우는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어떤 학생들은 가정 및 학교에서 미국 또는 미국 국경 내 부족 땅에서만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본 원칙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원주민 언어를 보호, 보존 및 장려하는 연방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의제는, 하나 이상의 언어 혜택을 받는 많은 아동들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그들이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언어 사용 혜택을 거부당함으로써 아동의 시민권이 침해되고 아동의 복지가 해를 입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제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이 다국어 사용의 약화로 인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방식이나, 언어 권리를 보호하고 원주민 유산 언어를 활성화하려는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예를 참조.: Nagle, Rebecca. “The U.S. has spent more money erasing Native languages than saving them.” *High Country News*. 2019년 11월 5일 자료. <https://www.hcn.org/issues/51.21-22/indigenous-affairs-the-u-s-has-spent-more-money-erasing-native-languages-than-saving-them> and Baldwin, Daryl Wade. “Analysis: How Indigenous languages can be preserved, and why those efforts help revitalize culture.” PBS. 2022년 10월 10일 자료. <https://www.pbs.org/newshour/nation/analysis-how-indigenous-languages-can-be-preserved-and-why-those-efforts-help-revitalize-culture>.

⁵ *Plyler v. Doe* 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 공립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Plyler v. Doe* 457 U.S. 202(1982))

⁶ 이 문서에서 말하는 ‘영어 학습자’라는 용어는 Every Student Succeeds Act 에 의해 개정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에서 정의한 의미를 따른다.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학생의 모국어 능력을 인정하는 자산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이러한 학생을 “신용 이중 언어 사용자” 또는 “이중 언어 학습자”로 지칭한다. 지원 자격, 자금 접근성, 데이터 세분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 문서에서 “영어 학습자”, “다국어 학습자” 등의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모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동’이다. 민권법 및 해당 법률 시행령 등에서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라는 용어도 사용되지만, 용어가 내포한 결핍의 어감을 고려하여, 이 문서에서는 그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⁷ 영어 학습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아동의 모국어로 과외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⁸ 역사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왔다. 참조: Sánchez, Thyama. “Richmond Teacher Accused of Prohibiting Student From Speaking Spanish.” 2023년 5월 9일 NBC Washington 보도. <https://www.nbcwashington.com/news/national-international/richmond-teacher-accused-of-prohibiting-a-student-from-speaking-spanish/3344766/#:~:text=A%20teacher%20at%20Thomas%20Boushall,speaking%20Spanish%20in%20her%20classroom;> Reid, T.R. “Spanish At School Translates to Suspension.” 2005년 12월 9일 Washington Post 보도.

⁹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OCR)은 학교에서 핵심적인 차별 금지 법령을 집행할 고유한 책임이 있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등의 법령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언어 상태 포함), 성별(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임신 또는 육아 상태 포함), 장애 및 연령을 이유로 한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¹⁰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영어 학습자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2015):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el-students-201501.pdf> 영어 학습자인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OSEP 요약 정보: 영어 학습자(EL)인 장애 학생은 IDEA 파트 B 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년 4 월 8 일 자료. <https://sites.ed.gov/idea/osep-fast-facts-students-with-disabilities-english-learners>.

¹¹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Informatio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Parents and Guardians and for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that Communicate with Them (2015):<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dcl-factsheet-lep-parents-201501.pdf>,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Title VI: LEP Parental Communications: Cleveland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OH) OCR Complaint No. 15-08-1276 (2011):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investigations/15081276.html>; 따라서 장애 학생의 권리에 대한 학부모 통지는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학부모에게 적용되는 다른 IDEA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¹² UnidosUS, A Generation at Risk The Impact of Immigration Enforcement on UnidosUS-Affiliated Classrooms and Educators (2020): <https://unidosus.org/publications/2024-a-generation-at-risk-the-impact-of-immigration-enforcement-on-unidosus-affiliated-classrooms-and-educator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Guidelines for Enforcement In or Near Protected Areas (2021 년 10 월): <https://www.dhs.gov/guidelines-enforcement-actions-or-near-protected-areas#:~:text=The%20change%20in%20name%2C%20from,in%20need%20of%20special%20consideration>

¹³ 학부모와 가족은 학교 및 학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와 가족이 가진 문제와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¹⁴ 연방 민권법에는 영어 학습자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아동의 의사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U.S.C. 20 1414, 34 C.F.R. § 104.35(c)(2)).

¹⁵ 영어 학습자는 영어 능력을 달성하고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¹⁶ Title III가 영어 학습자 학생 수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다음을 참조: Villegas, Leslie and Amaya Garcia. “A Federal Policy Agenda for English Learner Education.” New America. 2021년 3월 24일 자료. <https://www.newamerica.org/education-policy/reports/a-federal-policy-agenda-for-english-learner-education/>

¹⁷ Ever ELs란 현재 및 이전 영어 학습자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 카테고리이다. Ever ELs와 같은 카테고리가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등록과 같은 장기적인 결과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¹⁸ 커리큘럼 기회 제공에 있어 영어 학습자 학생에 대한 차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Title VI (Access to STEM): Cleveland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15-11-5003) (2014):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investigations/15115003.html>

¹⁹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손실로 인해 아이들은 몇 달 동안 대면 수업을 놓쳤으며, 일부 아이들은 EL을 위한 고품질 온라인 수업과 EL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디지털 커리큘럼을 포함한 원격 학습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 COVID-19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영어 학습자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학교와 학군은 영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보호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²⁰ Sugarman, Julie. “A Matter of Design: English Learner Program Models in K-12 Educ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8 년 6 월 자료. <https://www.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Program-Models-Final.pdf>